

사천시 주민투표조례(안)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20호, 2004. 6. 28)

총무위원회

2004. 6. 29.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6. 18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6. 19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4. 6. 28. :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(총무과장 김영고)

가. 제정 이유

2004. 1. 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1). 외국인의 주민투표 자격기준을 정함 (안 제3조)

-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

2). 주민투표의 대상 정함(안 제4조)

-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, 폐치분합,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
-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·리의 구역변경과 폐치·분합
-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
- 기타 주민의 복리·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

- 3).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를 정함 (안 제5조)
 -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
- 4). 서명요청기간을 정함 (안 제7조)
 -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
- 5).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·운영 규정(안 제12조)
 - 의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함
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
 -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소집
- 6).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결정 통지 기간을 정함(안 제13조)
 - 열람기간 또는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
- 7). 투표운동의 제한 시간을 정함(안 14조)
 - 호별방문 :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
 - 옥외집회 :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의원 김태주)

-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민투표법이 2004. 4. 29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
-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 되었으며 조례안중 중점 논의해야 할 부분이 제5조의 규정인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이 라고 판단됨.
-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의 20분의1이상 5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투표청구 주민수를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1을 적용했으며, 이는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최저한도인 20분의1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주민투표

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9분의 1을 적용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였고

- 여타 조례안은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제정되었으며
- 사전입법예고(2004. 5. 25 ~ 6. 14)하였으나 특이 사항 없었고, 조례안의 구조 및 체계, 자구, 용어사용 등 전반적인 구성이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6. 소수 의견 : 없음